

IV 체류관리제도 ·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 결혼 ·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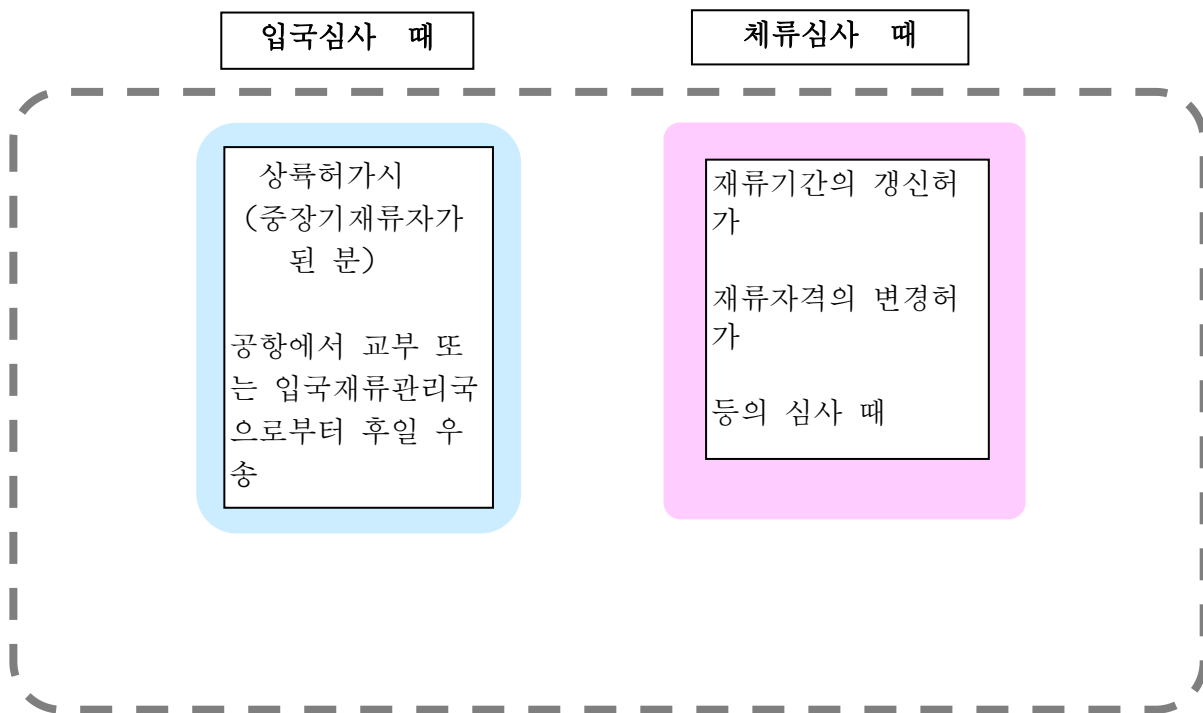
IV-1 체류카드

체류카드는 입국관리법상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됩니다.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중장기재류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 ①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정해진 분
- ②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정해진 분
-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이 정해진 분
- ④ ①에서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분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분
- ⑤ 특별영주자
- ⑥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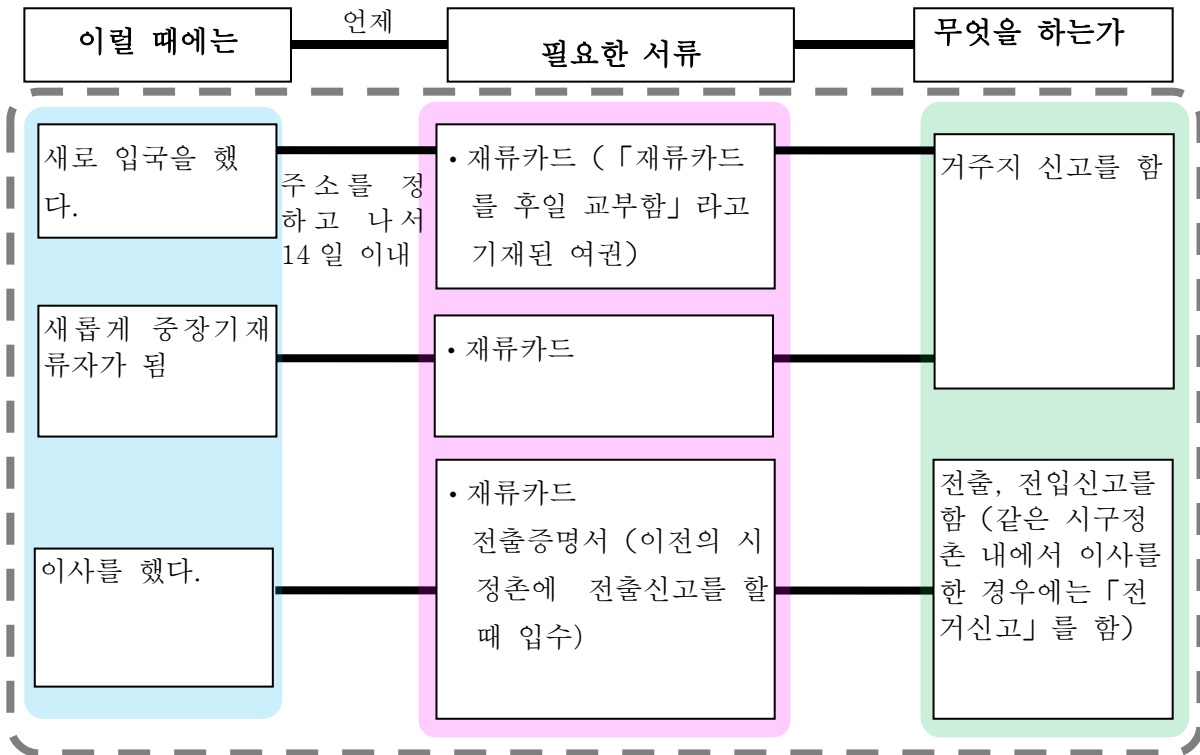
1. 체류카드 교부



체류카드는 신규로 상륙허가를 받았을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심사 때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할 경우,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의 분은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시구정촌에서의 수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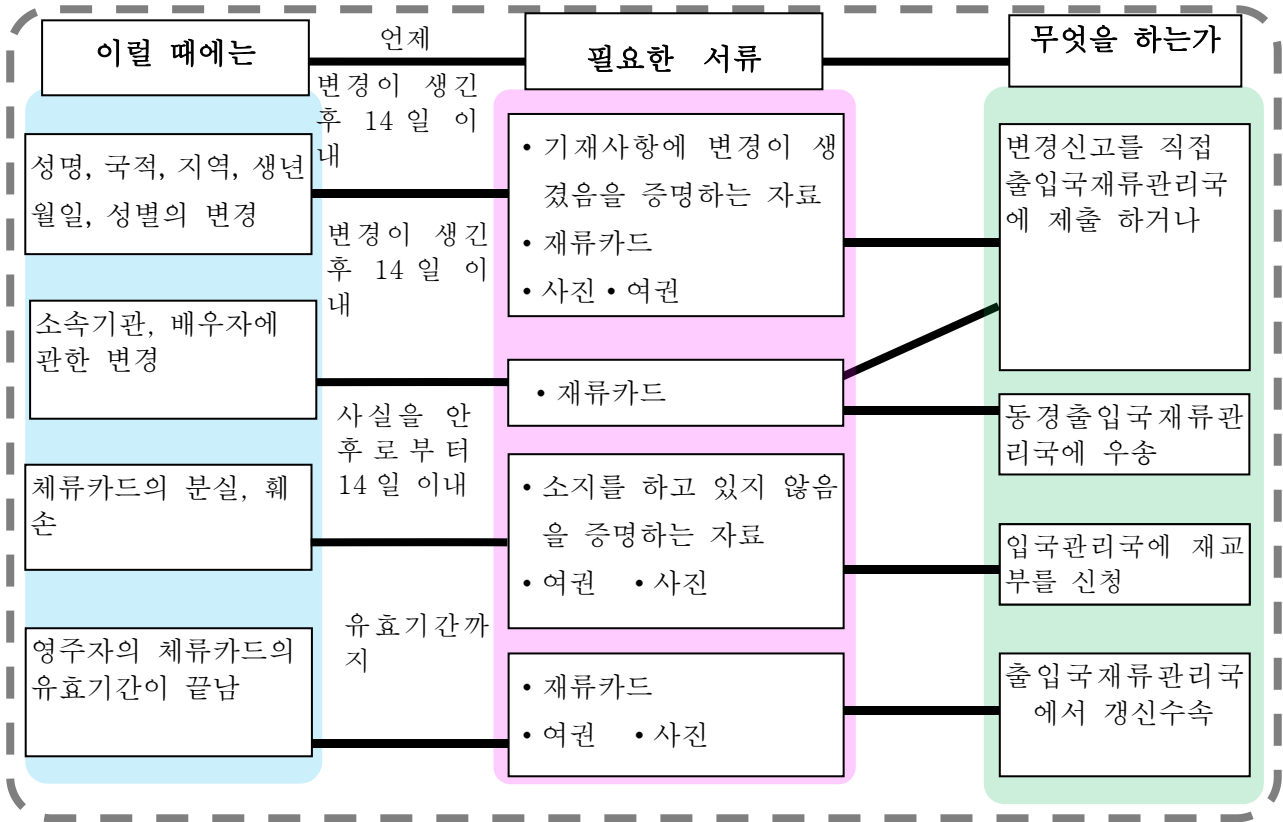


간사이공항,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츠부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재류자가 된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의 공해항으로 입국할 경우, 귀하가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신고를 한 후 재류카드가 귀하에게 우송됩니다.

재류카드는 얼굴사진, 성명,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로제한의 유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거주지에 관한 수속은 시구정촌에 신고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전출신고를 내고, 그 후 새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때, 재류카드와 함께 전입·전거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거주지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의 수속



(1) 변경신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이 바뀌었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당신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로를 위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유학」 등 배우기 위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고용처, 학교 등) 이 바뀐 경우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 에 우송합니다. 만일 당신이 배우자로서 「가족체재」, 「일본인의 배우자등」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 보낼 곳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코우난5-5-30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2) 재류카드의 재교부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3) 영주자등의 재류카드 갱신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수속에 관해서는 16세 이상의 영주자,또 한 고도전문직 2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부터, 16세 미만으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까지인 경우에는 16세 생일로부터

6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세 이상의 영주자 이외의 중장기체류자의 재류카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4.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의 성명 등 이외에 국적, 지역,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재류카드에는 통칭명은 기재되지 않지만, 주민표에는 통칭명 기재란이 있습니다. 「주민표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주민표는 관광 등의 단기체재자 등을 제외하고 적법에 의해 3 개월을 넘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거주지가 있는 분에 한해 작성됩니다. 중장기체재자 등 다음과 같은 분은 주민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중장기체재자
2.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4. 출생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거주지 시구정촌에서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이 경과체재기간의 60 일을 넘게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의 취득신청을 합니다. 이 재류자격취득허가를 받아 중장기재류자가 되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5. 마이넘버 제도

개인번호 (마이넘버) 는 12 자리로 되어있으며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사람 모두 받습니다. 마이넘버는 개개인이 다른 번호이며 원칙적으로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국내에서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일본에서 처음 주민표를 만들고 2, 3 주 지나면 주민표를 만든 주소로 마이넘버 통지서 (「통지카드」) 가 우편 (간이 등기) 으로 배달됩니다. 또 희망자에게는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카드)」가 교부됩니다. 「통지카드」(종이, 사진 없음) 나 「마이넘버카드」(IC 카드, 사진 있음) 모두 「주소」나 재류카드상의 「성명」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시정촌 창구에서 카드에 새로운 정보를 기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류기간 갱신 등으로 재류기간이 변경된 경우,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변경 수속도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 변경수속은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3 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응대)

* 통지카드, 마이넘버카드, 분실·도난에의한 마이넘버카드 일시정지 ☎0120-0178-27

* 마이넘버 제도, 넘버포털에 관한 내용 ☎0120-0178-26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9시 0분 ~ 오후 8시까지 응대)

[URL](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 <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

IV-2 체류수속

1. 재입국허가 (일본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

체류기간 사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경우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최대 5년간 유효 (단 체류기간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한 단수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또 「단기체제」의 재류자격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입국허가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 ② 재류카드 (⇒IV-1)
- ③ 여권
- ④ 수입인지 3000엔분 (일회허가) 또는 6000엔분 (복수허가)

재입국허가는 보통 당일내에 발행됩니다. 오사카부내에서의 수속은 오사카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재입국허가제도」가 도입되어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인 출국 후 1년 이내에 같은 활동을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국시 체류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류기간의 갱신

귀하가 지금 허가를 받은 일본에서의 체류에는 보통 허가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갱신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허가기한이 만료하는 3달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류기간갱신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 ② 여권
- ③ 재류카드
- ④ 지금까지와 이후의 체류활동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상세한 내용은 오사카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⑤ 사진

허가

서류 등에 따라 심사되어 재류자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한 시점부터 재류카드의 뒷면에 신청중임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허가가 나면 중장기재류자의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3. 재류자격의 변경

귀하가 현재 허가받은 재류자격활동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출국하지 않고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사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필요서류는 변경하려고 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URL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16-2.html>

4. 자격외활동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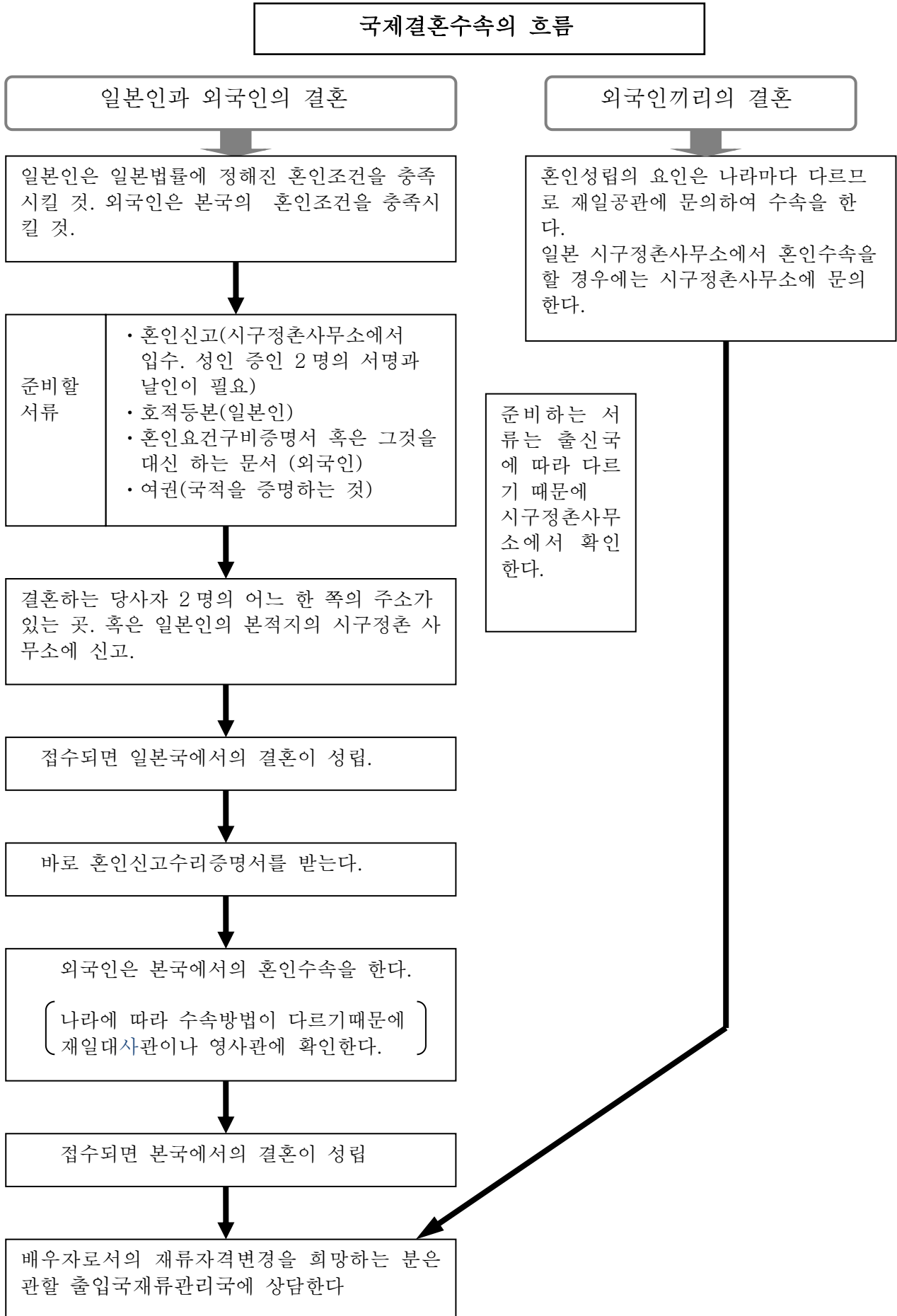
귀하에게 주어진 재류자격외에 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면 불법취로가 됩니다. 예컨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 주십시오.

새로 입국하는 분 중에 「유학」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단, 「3개월」을 넘는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에 한해) 에는 입국시 공해항에서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서류

- ①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② 재류카드
- ③ 여권
- ④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IV-3 결혼



1. 일본인과 외국인의 결혼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 시구정촌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일본인은 일본법률에서 정해진 결혼의 조건을, 외국인은 그 나라의 결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호적등본 혹은 초본 (일본인)
2. 여권 (국적을 증명하는 것)
3. 자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발행하는 혼인요건증명서나 그를 대신하는 문서 (일본말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번역자의 주소/성명/날인이 있는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함.)
4. 혼인신고서 (창구에 있습니다. 신고에는 20세 이상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 신고서는 일본어로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 성립된 결혼은 본국에서의 신고도 필요합니다. 그때에는 「혼인신고수리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신고를 한 시구정촌사무소에서 발행 받도록 해 주십시오. 본국에서의 수속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IX-5)

결혼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2. 외국인끼리의 결혼

외국국적인 분들간의 일본법률에 따른 결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각각 본국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고는 단정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신고에 대해서는 자국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 (부록IX-5) 과 신고하는 일본의 시구정촌사무소 (부록IX-1)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3. 재류자격의 변경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인배우자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할 경우 혹은 외국인끼리의 결혼이라도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부록IX-2)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재류카드 기재내용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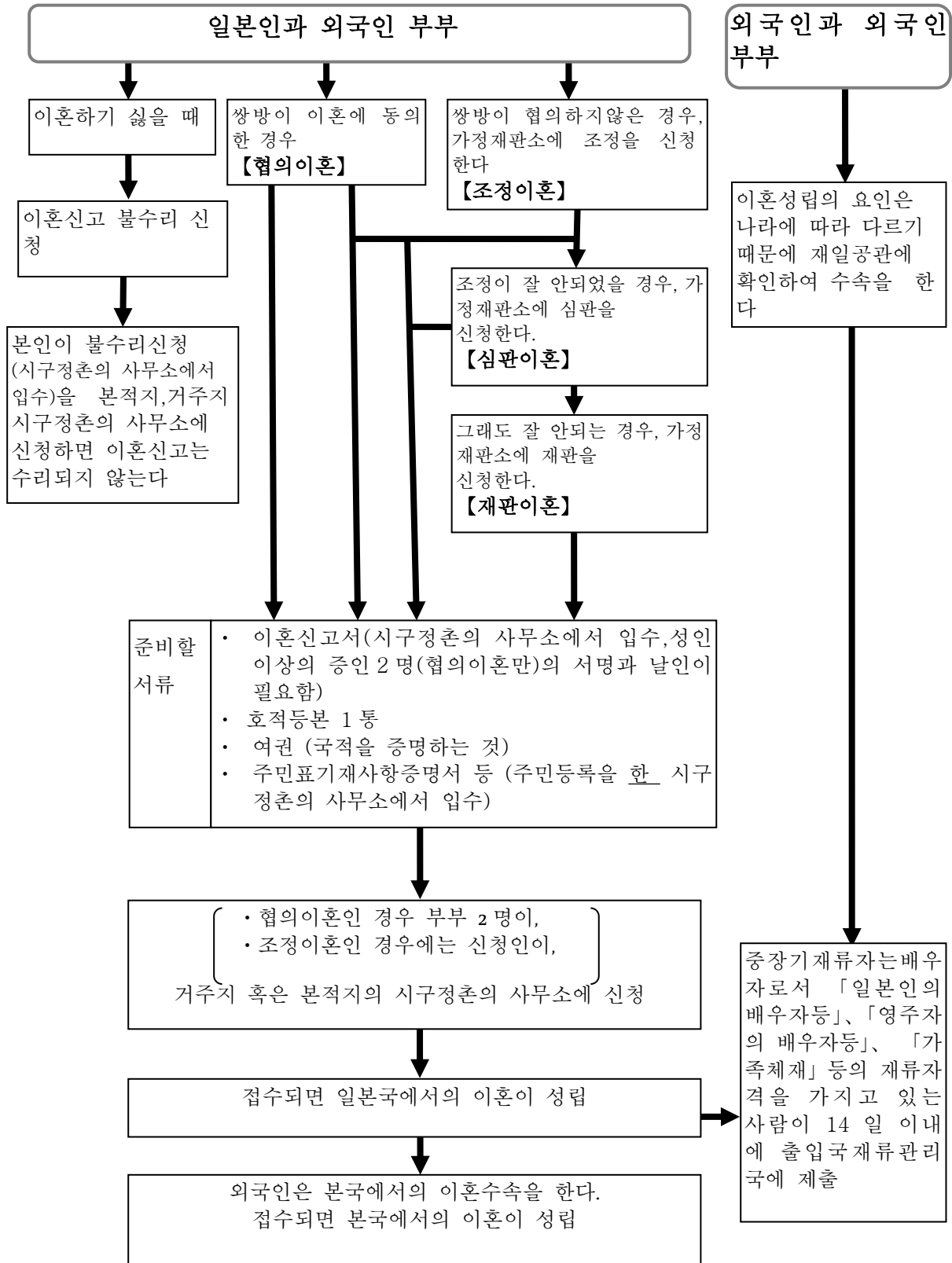
결혼 후에 이름이 변경될 경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또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시정촌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록IX-1)

5. 기타 변경

결혼하면 세금, 연금, 건강보험, 직장에서의 급여면에서 기존과 취급이 달라질 경우가 있으므로 직장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IV-4 이혼

국제결혼인 경우의 이혼수속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속하여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귀하의 본국에서는 이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하는 수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며 부부쌍방이 이혼할 것을 동의 하면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립됨으로써 성립되는 「협의이혼」, 가정재판소가 관여하여 성립되는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이혼수속을 하고 본국의 이혼수속을 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도 있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 이혼에 필요한 요건이나 수속이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 본국의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부록Ⅸ-5)

2. 이혼하기 싫은 경우

당신이 일본인 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서에 서명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혹은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앞으로 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을 해놓으면 당신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이나 재판수속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할 일은 없습니다. 단 이 제도는 부부쌍방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혼 후의 재류자격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또 외국인배우자로서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나 「가족체재」 등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혼하면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배우자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

「가족체재」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나, 「일본인 배우자 등」「영주자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본에 재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상담창구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부록Ⅸ-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4. 등록사항의 변경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변경신고를 해 주십시오. 또, 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구정촌사무소(부록Ⅸ-1)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IV-5 사망

1. 사망신고

외국인이 일본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법률에 따라 시구정촌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의 사실을 인지한 후 7일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망확인은 매우 명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 혹은 감찰의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의사에 의한 사망확인 후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를 받아 그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지 혹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시구정촌 담당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재류카드를 사망한 후 14 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납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으로 우송합니다. 또 사망한 분의 본국에서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나라에 따라 수속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부록IX-5)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반납우송처 135-0064 도쿄도 고우도우구 오우메 2-7-11 도쿄항만합동청사 9층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오다이바분실

2. 매장

인구가 밀집한 오사카부에서는 토장을 허가해주는 묘지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나 관습상 화장이 아니라 토장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묘지를 찾거나 본국으로의 유해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사관 등 (부록IX-5)에 상담해 주십시오.